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체계적인 중동·아프리카지역 안보 현안 대응과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중동아프리카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7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, 국방과학기술혁신 중·장기 정책 수립·시행, 국방연구개발 및 유·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첨단전력기획관, 국방연구개발총괄과 및 유무인복합체계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7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7. 2. ~ 7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4제1항 중 “2025년 7월 25일”을 “2027년 7월 25일”로 한다.

제29조5제1항 중 “2025년 7월 25일”을 “2027년 7월 25일”로 한다.

제29조6제1항 중 “2025년 7월 25일”을 “2027년 7월 25일”로 한다.

제29조7제1항 중 “2025년 7월 25일”을 “2027년 7월 25일”로 한다.

별표 3 제4호 중 “2025년 7월 25일”을 “2027년 7월 25일”로 한다.

별표 3 제5호 중 “2025년 7월 25일”을 “2027년 7월 25일”로 한다.

별표 3 제6호 중 “2025년 7월 25일”을 “2027년 7월 25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4(중동아프리카정책과)	제29조의4(중동아프리카정책과)
①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「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」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 라 <u>2025년 7월 25일</u> 까지 존속하 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 정책과를 둔다.	① ----- ----- ----- - <u>2027년 7월 25일</u> ----- ----- 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9조의5(첨단전력기획관) ① 국 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「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」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 라 <u>2025년 7월 25일</u> 까지 존속하 는 한시조직으로 첨단전력기획 관 1명을 둔다.	제29조의5(첨단전력기획관) ① -- ----- ----- ----- -- <u>2027년 7월 25일</u> ----- ----- -----.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29조의6(국방연구개발총괄과)	제29조의6(국방연구개발총괄과)
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「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」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 라 <u>2025년 7월 25일</u> 까지 존속하 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 총괄과를 둔다.	① ----- ----- ----- -- <u>2027년 7월 25일</u> ----- ----- 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9조의7(유무인복합체계과)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「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 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유무인복합체계 과를 둔다. ② ~ ⑤ (생략)	제29조의7(유무인복합체계과) ① ----- ----- ----- 2 027년 7월 25일----- ----- 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5